제766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1.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강화)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당,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하고자 함 * 떡류, 당류가공품, 김치류, 젓갈류 등	1.비중요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수립 및 통지 의무(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운행제한 사유, 운행제한 명령 관련 소유자 주의사항, 소유자 불편해소 방안 등이 포함된 소유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 2.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조사 통보 의무 강화(강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가 조사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조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작자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3.성능시험대행자의 적정성 조사 결과 보고 의무 부과(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가 실시한 적정성 조사의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 4.제작자등에 시정조치 재공개 의무 부과(신설) 시정조치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율이 70% 미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시정조치 재공개 기준을 명확화 5.제작자등에 제작결함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신설)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부터 제작결함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3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해양수산부)	1.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추가 (신설) 근해자망 어업인의 오징어 어획량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설정	1.비중요
4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 (고용노동부)	1.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마련(신설)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마련	1.비중요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법무부)	1.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신설) ○분양자가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시 건물 전체의 전유부분 중 이전등기를 마친 전유부분의 비율 등 관리단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선임신고 및 회계감사 등 관리인에 대한 의무 부과(신설) ○관리인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 회계연도 기준 징수한 총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 회계연도 기준 징수한 총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음 ○회계감사 결과를 받은 관리인은 1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 등에게 서면 보고 하여야 함 ○관리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수소전문기업 확인 및 사후관리(신설) - 수소전문기업 확인 유효기간(제20조), 사후관리(제21조) 및 취소 절차(제22조) 2.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설정(신설) -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설정 (제24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제26조, 제27조)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제28조, 제29조) 4.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보고 의무규정 마련(신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제41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수익사업(제46조) 5.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수소용품 제조사업 안전관리자 종류 등의 기준 마련(신설) -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제49조)에 관한 규정 -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 종류 및 직무범위 등 세부 규정(제50조, 제51조) 6.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신설)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주기 규정(제53조) 7.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표시 규정 및 수소사업자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금지행위 기준 마련(신설) - 수소충전소의 수소판매가격 보고내용 및 절차, 공개 및 표시 관련 규정 (제55조) -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판단기준(제59조)	
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처분 강화(강화)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한 경우 : 1차 취소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2.대체 노후 어선의 조치결과 미제출 시 처분 강화(강화) 35.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취소	1.비중요 2.비중요
8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소방청)	1.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신설)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